

의안번호	2203249
의 퇴 인	이철규 의원
회 답 일	2024. 9. 23.
추 계 번호	24A3264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2조의3(손해보험의 가입 등)	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함(제2항)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2조의3(손해보험의 가입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안 제22조의3에 따라 국가 등이 전기공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은 전기공사업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 또는 해당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22조의3제1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계상한 도급비용에서 현행 도급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할 수 있음
 - 이때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은 공사금액, 보험료율, 보험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 다만, 개정안은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전기공사업통계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전기공사건수와 실적은 각각 938,312건, 33조 9,818억원 규모임
 - － 개정안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을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할 경우 전기공사건수와 실적은 2022년 기준으로 각각 124,748건, 3조 3,672억원 규모임

[표 1] 발주기관별 전기공사건수 및 실적: 2020~2022

(단위: 건, 억원)

	2020		2021		2022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017,005	322,856	1,047,505	313,473	938,312	339,818
정부기관	26,964	10,454	25,197	10,388	27,930	10,162
지방자치단체	141,693	21,969	98,171	21,889	96,818	23,509
공공단체	36,400	27,394	40,929	19,857	42,713	27,606
공기업	5,139	15,044	5,827	22,521	4,300	16,572
주한외국기관	149	427	191	348	159	330
해외외국기관	465	8,733	949	7,398	531	10,165
민간	525,577	200,323	656,651	192,880	473,869	216,153
한국전력	280,618	38,514	219,590	38,193	291,992	35,320

자료: 통계청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윤주철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윤주철	02-6788-4655	yjc@nabo.go.kr